

(제2-7호)

사업목적 변경

1. 변경내용	추가	-			
	삭제	-			
	변경	<p>[정관] 제2조 (목적)</p> <p>(생략)</p> <p>7. 기업구조조정 업무</p> <p>(중략)</p> <p>9.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</p> <p>10.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</p> <p>(중략)</p> <p>14. 금융자문업무</p> <p>(생략)</p>			
2. 변경이유	자구수정				
3. 이사회결의일	2019.10.17				
- 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-	불참(명)	-	
- 감사 참석여부	참석				
4. 주주총회개최예정일	2019.10.17				
5. 관계당국의 허가 등	-				
6. 기타	-				

[작성요령]

- 주1) 사업목적의 변경(추가, 삭제 포함)이 있고 이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
- 주2) 정관상 목적사업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정관변경 주주총회의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를 말함
- 주3)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 참석여부를 부기
- 주4) “관계당국의 허가 등”은 당해 사업(기존의 영위사업 및 변경사업을 말한다)의 인·허가 또는 면허권에 관련된 행정당국의 허가경위 및 결과를 기재